

LOVE-40 회칙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칭)

본 클럽은 LOVE-40 Tennis club 이라 칭하며, 클럽 명칭은 테니스 스코어 0-40 에서 유래했다.

제 2 조 (목적)

본 클럽의 목적은 회원들간의 올바른 예의와 매너를 지켜며, 테니스를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는데 있다.

제 2 장 회 칙

제 1 조 (회원)

본 클럽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.

1. 정회원

- a. LOVE40 club 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.
- b. 준회원으로로서 3 개월 이상 모임에 꾸준히 참가할 경우 임원회의 과반수 이상과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- c. 재가입 신청자로 임원의 과반수 이상과 정회원의 2/3 이상 찬성으로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
2. 준회원

- a. LOVE40 club 에 신청한 자로 3 개월 유효기간에 있는 자를 말한다.

3. 방문자

- a. LOVE40 club 에 잠시 방문한 자를 말한다.

제 2 조 (권리와 의무)

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지켜야한다.

1.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2. 회원은 본회/총회의 행사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야한다.
3. 회원은 회비/특별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4. 회원/준회원/방문자는 게임도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 본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.
5.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리와 임원에 선출될 권리를 갖는다.

6. 정회원과 준회원은 본 회칙과 본 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7. 모든 공식적인 알림과 공지사항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한다.

제 3 조 (자격상실)

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 클럽의 회원자격상실을 임원회에서 결정해서 통보한다.

1. 회원간의 친목을 저해 하였을 때.
2. 본인 스스로 회원의 자격을 포기하고자 할 때.
3. 본 회가 규정하고 있는 회비 및 전체회의에 2 회 불참시 경고를 하고, 경고 후 불참시 자동제명으로 한다(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전에 통보할 경우 예외).
4. 특별한 사유없이 3 개월 이상 게임/연습에 참가하지 않은 자(개인적인 사정 통보는 제외).
5. 회원은 탈퇴 후 당해년도 재가입을 할 수 없으며, 다음 년도 재가입이 신청이 가능하다.

제 4 조 (회원가족)

회원의 가족은 자동으로 준회원의 자격을 부여하여 게임에 참여 할 수있다. 회원 가족은 직계존속(부모, 형제, 자녀, 손자녀, 조부모)로 한다.

제 3 장 임 원

제 1 조 (임원구성)

본 club 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 필요에 의해 임원회에서 각부 부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, 임원은 클럽활동을 3 년이상한 회원에 한 한다.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
1. 회 장
2. 부회장
3. 총 무
4. Drill/기술 위원
5. 의료위원

제 2 조 (선출직)

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.

제 3 조 (임명직)

1. 정기총회에서는 회원중에서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총무 및 Drill 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.
2. 본 회의 임기 만료된 전임회장을 본 회의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한다.

제 4 조 (임원의 직무)

1. 회장은 본 회의를 대표하고 총회가 승인한 사업계획 내에서 운영전반에 걸친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.
2. 회장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한 대내외적인 섭외 및 홍보업무를 관장한다.
3. 회장만이 official 한 발표를 할 수 있다. 회장 부재시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.
4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5. 총무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보고한다.
 - a. Club 의 재정 관리, 집행을 관장한다.
 - b. Club 운영상의 일상 업무를 관장한다.
 - c. 대외 경기 참석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.
 - d. 회계업무에 대해서는 년 2 회(상반기, 하반기)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보고한다.
6. Drill 위원은 회원 상호간의 실력 향상과 대회 참가에 필요한 drill 과 연습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.
7. 의료고문은 회장의 자문기관 및 의료 수행한다.

제 5 조 (임기)

회장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회원들의 요청이 없으면 자동연임된다. 임원직은 회장의 권한으로 연임 혹은 제명할 수 있다.

제 4 장 총회 및 임시총회

제 1 조 (총회 및 게임)

1. 총회는 년 1 회로 하며 매년 12 월중에 개최한다.
2. 임시총회는 회원간의 협의 하에 개최할 수 있다.
3. 임시총회는 소집일로부터 최소 7 일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목적, 일시, 장소 등을 회원들에게 공지하도록 한다.
4.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- a. 회장단의 선출
 - b. 회칙 개정
 - c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- d.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 - e. 기타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 2 조 (임원회의)

1. 회장은 본 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2. 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집행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3. 임원회의 필요한 경우 고문진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4. 임원회는 임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 이를 보선할 수 있다.
5. 임원회의에서는 기금의 관리방법과 운용 등 기금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여 총회에 회부한다.

제 3 조 (회의록)

총회 및 임원회의에 대한 사항은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며, 이는 총무가 담당한다.

제 5 장 재정

제 1 조 (회비)

1.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입회비, 년회비, 특별회비 및 기부금으로 총당 운영한다.
2. 회원의 **입회비는 \$100** 로 하며, **1 년회비는 \$200** 로 한다.
3. 부부세대의 경우 입회비는 각각 납부하며, 연회비는 부부 합산 \$300 을 납부한다.
4. 년회비는 매해 1 월 15 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며, 기한을 넘기시에 매달 \$20 추가 패널티를 더한다.
5. 회원자격이 상실된 자의 입회비 및 월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6. 특별회비는 임원회의 결의로 별도의 행사 및 모임을 위한 회비를 건을 수 있다.
7. 회비는 테니스공 구입, 공동 장비 구입, 단체모임 회식경비, 경조사비, 기타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사용한다.
8. 준회원의 경우 **3 개월 회비 \$60** 을 납부하여야 한다.
9. 상반기(1 월-6 월)에 가입 시 회비는 \$200 이며, 하반기(7 월-12 월) 가입시 회비는 \$100 이며, 입회비는 상/하반기 동일하다.

제 6 장 Liability waiver

제 1 조 (liability waiver)

모든 회원은 게임 및 행사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나 인명피해에 대한 특정한 개인이나 본회에 책임을 묻지않겠다는 Liability waiver 에 사인해야하며, 총무가 관련 서류를 관리보관한다.

제 7 장 홈페이지

제 1 조 (홈페이지포스팅)

본회의 홈페이지는 www.azlove40.org 이며, 모든 공식적인 공지사항을 게시하므로, 회원들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여야한다.

1. 홈페이지에 있는 콘테츠는 제한적으로 대중에게 개방한다.
2. 홈페이지에 테니스에 관련된 글과 사진을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으나, 타인을 비방하거나 클럽의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, 종교, 정치와 관련된 내용을 금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.

제 8 장 기타

제 1 조 (회계년도)

본 클럽의 회계연도는 1 월 1 일부터 익년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.

제 2 조 (관례준용)

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

제 3 조(소셜미디어)

1. 본 클럽에서는 회원들 개인간의 소셜미디어는 공식적인 알림창이 아님을 분명한다.
2. 개인적인 테니스 번개모임 및 개인적인 정보 공유를 위한 사용은 적극 추천한다.

부 칙

제 1 조 (개정)

본 회칙은 필요에 의해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

제 2 조 (시행)

이 회칙은 2017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